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선갑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20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0월 31일

발 의 자 : 김선갑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기대·김생환·김인제·김창수·
맹진영·박호근·서영진·송재형·
이윤희·최관술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각종 재난·사고·폭력·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시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바,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안전교육 수행 시 실습교육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안전교육의 실효성과 운영에의 내실화를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교육 수행 시 생활안전교육, 각종 폭력예방교육, 응급처치교육, 심폐소생술 등의 실습교육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11조제2항 각 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”을 “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대처를 위한 생활안전교육
2. 학교폭력, 성폭력, 아동학대, 집단따돌림 등 각종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교육
3. 열사병, 화상, 골절, 출혈,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
4. 지진, 해일, 폭염, 황사·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, 붕괴, 포탄·생화학무기공격 등 비상사태 대처를 위한 각종 재난대응교육
5. 이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안전 실습 교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안전교육의 실시) ① (생략)</p> <p>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<u>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</u>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11조(안전교육의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</u>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대처를 위한 생활안전교육</u> 2. <u>학교폭력, 성폭력, 아동학대, 집단따돌림 등 각종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교육</u> 3. <u>열사병, 화상, 골절, 출혈,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</u> 4. <u>지진, 해일, 폭염, 황사·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, 붕괴, 포탄 생화학무기공격 등 비상사태 대처를 위한 각종 재난대응교육</u> 5. <u>이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안전 실습 교육</u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